

「IBKSB 회전 정기예금」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- ◆ 인터넷뱅킹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**상 품 명** : 「IBKSB 회전정기예금」
- **상품특징** : 약정한 회전주기별(12개월)로 이자율이 변동되는 정기예금

2 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

(2026.01.01.기준)

구 분		내 용										
가입대상		• 제한없음 (단, 비대면 가입의 경우 법인, 미성년자, 비거주 외국인 가입 불가)										
가입방법		• 영업점, 인터넷뱅킹, 모바일(SB톡톡+, i-Bank)										
해지방법		• 영업점, 인터넷뱅킹, 모바일(SB톡톡+, i-Bank)										
가입금액		• 100,000원 이상										
가입기간		• 24개월 이상 ~ 60개월 이하 (연 단위)										
이자지급시기		• 단리식(매월 이자지급식) • 복리식(회전주기별 이자지급식) : 매 회전주기 도래시 12개월 이자 지급 원금은 자동 회전 연장										
예금자 보호여부 [해당]		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1억원까지”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※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예금보험공사,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										
제한 사항		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• 질권 설정 : 가능 (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5% 이내로 가능)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										
이자율	기본	•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• 가입 후 매 12개월 회전주기 단위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약정이율이 변동됩니다. (기준일 : 2025.12.25. 세전 / 단위 : %)										
		<table><tr><th>계약기간</th><th>연이율</th><th>연평균수익율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>24개월 이상 ~ 60개월 이하</td><td>3.00</td><td>3.04</td><td>매 12개월 회전주기 기준 정기예금 12개월 고시금리 + 0.10% 로 약정이율 변동</td></tr></table>				계약기간	연이율	연평균수익율	비고	24개월 이상 ~ 60개월 이하	3.00	3.04
	계약기간	연이율	연평균수익율	비고								
	24개월 이상 ~ 60개월 이하	3.00	3.04	매 12개월 회전주기 기준 정기예금 12개월 고시금리 + 0.10% 로 약정이율 변동								
만기 후	•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 후 이자율 적용											
	<table><tr><th>경과기간</th><th>이 율</th></tr><tr><td>1개월 이내</td><td>약정이율과 만기일 현재 고시이율 중 낮은이율</td></tr><tr><td>1개월 초과</td><td>보통예금 이율 적용</td></tr></table>				경과기간	이 율	1개월 이내	약정이율과 만기일 현재 고시이율 중 낮은이율	1개월 초과	보통예금 이율 적용		
경과기간	이 율											
1개월 이내	약정이율과 만기일 현재 고시이율 중 낮은이율											
1개월 초과	보통예금 이율 적용											

구 분	내 용		
만기이자 산출근거	구 분	이자 계산식	
		월 단위	일 단위
	단리식	원금×이율/12×월수	원금×이율/365×일수
	복리식	원금×{(1+이율/12) ⁿ -1} (n은 경과월수)	(원금+월복리이자)×이율/365×일수
수익률	•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15.4%*)을 공제하여 지급 * 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를 징수		
만기의 자동해지	•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(타행포함)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.		
중도해지 이율 및 계산방법	• 1개월 미만 : 계약일의 보통예금 이율 범위내 적용 • 1개월 이상 : 약정이율 × 차등률 [단, 최저금리 : 약정이율 × 50%]		
	예치기간	이 율	비 고
	1개월 미만	연 0.4%	보통예금 이율
	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	약정이율 × 50%	약정이율의 50%로 최저 금리 설정
	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	약정이율 × 52%	
	6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	약정이율 × 55%	
	12개월 이상	• 회전일(매 금리변경일) 경과 후 중도해지 시, 매 12개월 경과 시점까지에 한하여 약정이율 적용 • 연장일부터 해지전일까지는 중도해지 이율 적용	
	• 계산방법<예시>		
	※ 가입기간이 “1개월 미만”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약정이율의 50%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, 위 그림은 중도해지이율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임.		
위법계약 해지권	•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 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 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 에 수락여부를 통지 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 하여야 합니다. •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		
자료열람 요구권	•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열람의 목적,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 •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,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. • 저축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		

구 분	내 용
세제혜택	•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• 가입대상 :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「기초연금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※ '20.1.1.이후 가입(자동재예치)분부터 「직전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」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분할해지	•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
자동재예치	•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자동재예치 가능. 다만,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, 계좌번호는 동일합니다. •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,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※ 자동재예치 제외(불가) 사유 :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,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,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
연계·제휴 서비스	해당사항 없음

3 |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등

- **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** :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 (1522-79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ibksb.co.kr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**금리변동형 정기예금**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, **금리 하락기**에는 **약정금리 인하**로 **소비자에게 불리**할 수 있습니다.

※ **계약체결 전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명(날인)하시기 바랍니다.**

- ① 본 **예금 상품**을 **계약**하고,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**충도해지**하는 경우, **가입기간에 따라 충도해지 이율이 적용**되며, **약정이율로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음**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?

☐ 예 / ☐ 아니오 ☞ "충도해지 이율 및 계산방법" 항목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

- ② 본인은 IBK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**상품설명서**를 제공받았으며,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**주요내용,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**에 대하여 **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**하였음을 **확인**합니다.

20 . . .

고객명 :

(서명/인)

● 금융용어 설명

용 어	내 용
압류	국가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,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
가압류	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
질권설정	자기 또는 제삼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,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
경과기간	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 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

※ 출처 :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, 금융감독원 알기쉬운 금융용어